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199
------	------

2023. 9. 6.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9.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

### 1. 제출이유

가. 서울시는 전문적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이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나. 사무명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다. 추진근거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라. 출연의 필요성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진단, 임직원 교육, 경영지도·컨설팅, 정책연구 등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지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도모

마. 주요사업 내용

- 지방공기업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
- 지방공기업(광역+기초)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등 수행
- 지방공기업 컨설팅 지원
- 지방공기업 설립·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법정지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법정지정기관)
- 지방공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임직원 전문교육

바. 출연대상 기관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 법인설립 : 1992. 3. 2.
- ※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법정기관 전환(2016. 6)
- 조 직 : 3실 2센터 / 정원 65명 ※현원 60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0명, 감사 1명
- 시설현황 : 건물(지상6층) 연면적 2,550㎡, 부지 640㎡
- 위치도



사.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7천 8백만원
- 산출근거 : 경상운영비 5천만원, 사업비 2천 8백만원

### 3.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가.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세출예산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됨.

#### 나. 지방공기업평가원 현황 및 출연 근거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출범(지방자치경영협회, 1992년)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이하 “평가원”)은 2016년 「지방공기업법」 개정<sup>1)</sup>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컨설팅, 정책연구, 교육연수 등을 수행하는 법정기관으로 전환됨(제78조의4)<sup>1)</sup>.
  - 현재 조직은 3실 2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원 12명<sup>2)</sup>, 직원 58명 (정원 65명)임.
  - 현재 동 평가원은 정관<sup>3)</sup>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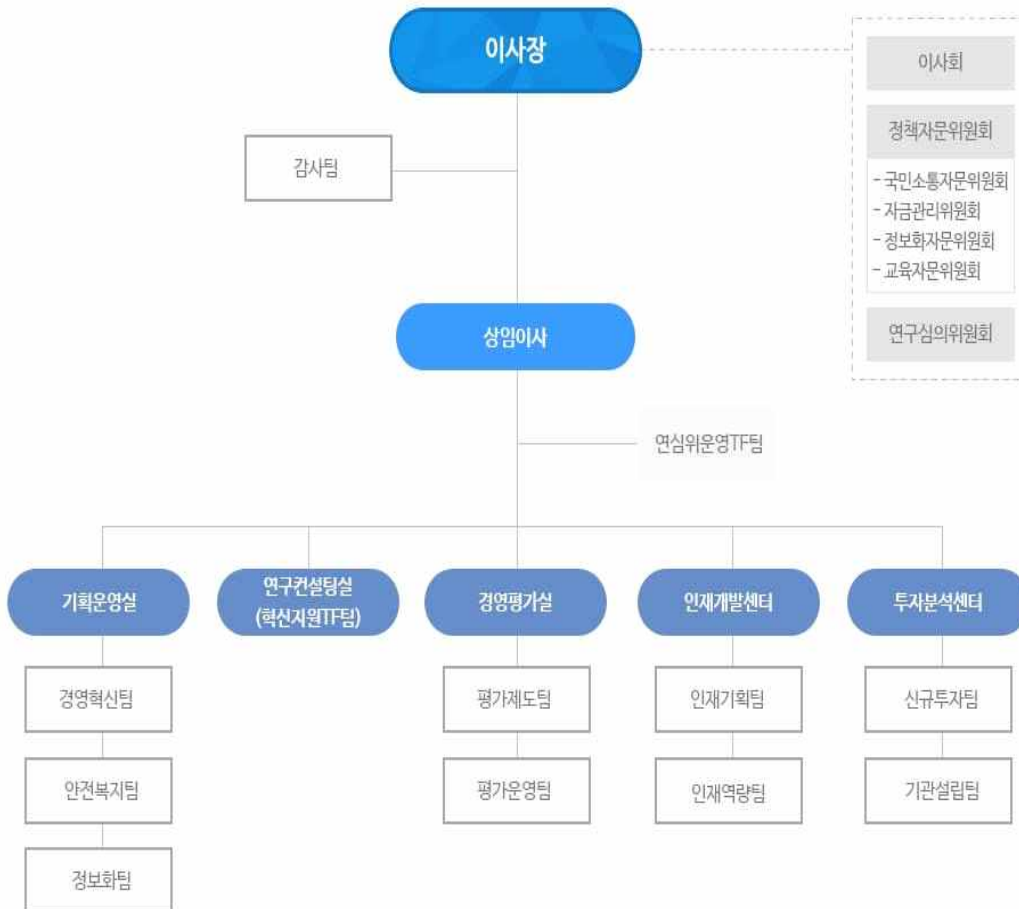
1)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당연직이사 5명, 위촉직이사 4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2023년 8월 현재 위촉직 이사 1명이 공석임.

3) 제18조(임원의 선임) ③ 비상임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위촉직이사로 구분하며 다음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 중 5명이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선임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순서에 따라 2027년에 비상임이사를 맡을 예정임.

### <지방공기업 조직도>



-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서울시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타 시·도와 함께 평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 있음.

호의 직에 취임한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되고, 당연직 이사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1.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2.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의 기획조정(관리)실장 4~5인(윤번제로 선임)

#### 다. 평가원에 대한 출연 적정성 검토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 혁신을 위한 경영평가, 정책연구 및 지방 공공기관 상시 자문 등을 수행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지원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음.
- 특히 매년 경영평가·정책연구·교육·경영컨설팅·내부만족도 조사·자문 등을 동일한 수준으로 무료로 지원하는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편 동 평가원의 2024년도 수입예산 154억 5천만원(추정치) 중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공단 출연금은 47억 8천만원이며, 자체 사업수입은 102억 5천만원, 임대료 수입 등은 4억 2천만원임.
  - 그리고 전체 출연금 47억 8천만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출연금은 12억 1천만원이고, 나머지 35억 7천만원은 지방공사·공단이 부담할 예정임.
-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관련하여 그 산정기준은 시·도 재정력지수(50%)와 공기업 수(50%)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서울시의 경우 재정력지수는 1.4075로 4구간에 해당되며(4천 2백만원), 공기업수는 32개로 3구간에 해당되어(3천 6백만원) 총 7천 8백만원을 출연할 예정임.

< 시·도별 출연금 산정기준 >

(단위 : 백만원)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
0.5	세종, 제주	18	0.5	세종, 제주	18
1	0.5이하 ~	24	1	1~15	24
2	0.5~0.70이하	30	2	16~25	30
3	0.7~0.90이하	36	3	26~35	36
4	0.9초과 ~	42	4	36~	42

< 주요 시도별 출연금 배분금액 >

(단위 : 백만원)

시·도	출연금액			시·도	출연금액			시·도	출연금액		
	'23	'24	차액		'23	'24	차액		'23	'24	차액
서울	78	78	-	대구	60	60	-	강원	60	60	-
경기	84	84	-	광주	54	54	-	충북	60	60	-
인천	60	60	-	대전	54	54	-	충남	66	66	-
부산	60	60	-	울산	54	54	-	전북	54	54	-

- 그리고 이러한 서울시 출연금은 지방공기업의 정책개발, 임직원 전문교육 등을 위한 전문인력 37명의 인건비 5천만원과 정책연구, 컨설팅 등 지원사업비 2천 8백만원으로 집행될 계획임.

< 서울시 출연금 세부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세부산출 내역
계	78,000	
경상운영비	50,000	
인건비	50,000	
기본급	50,000	• 1,000,000천원 × 5% (연구직 37명)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세부산출 내역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정책연구 및 컨설팅, 임직원 전문교육 전문인력 등(37명) 인건비
시도등지원사업비		28,000	
	정책연구	8,000	• 외부전문가 보상비, 인쇄비, 회의비, 포럼 등
	컨설팅	8,000	• 외부전문가 보상비, 인쇄비, 회의비 등
	발전사업	12,000	• CEO 및 신규입사자, 온라인 등 무료교육

- 최근 2년간 동 평가원의 서울시 관련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컨설팅, 정책연구와 역량 강화 전문교육, 자문 등을 수행하였는바, 법적 근거 및 그동안의 업무실적, 그리고 17개 시·도의 공동 출연이라는 당위성 등을 감안할 때 출연금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지방공기업평가원 2022~2023년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 >

연도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평가 : 총 31개 기관(하수도,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4개 자치구 시설공단)</li> <li>○ 정책연구 : 17개 과제 수행</li> <li>○ 역량강화 전문교육 : 870개 과정 42,365명</li> <li>○ 경영컨설팅 : 20개 기관, 24건(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지원' 등)</li> <li>○ 법무노무세무 등 자문 : 19건(서울연구원 '중대시민재해 해당 여부' 자문 등)</li> </ul>
'23년 (7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평가 : 총 31개 기관(상수도,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물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4개 자치구 시설공단)</li> <li>○ 정책연구 : 5개 과제 수행 중</li> <li>○ 역량강화 전문교육 : 636개 과정 18,529명</li> <li>○ 경영컨설팅 : 16개 기관, 16건(120다산콜재단 'ESG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등)</li> <li>○ 법무노무세무 등 자문 : 11건(서울문화재단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 등)</li> </ul>



- 한편 지난 2021년 8월 제302회 임시회에 제출된 동 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특정 시·도에 불합리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평가과정을 시스템화하는 등 경영평가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음.
- 그리고 당시 지적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편 시 기관 규모와 지역 특성, 주요 사업의 유형별 특성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및 지표 내 평가항목을 전면 재검토하고 체계화할 방침을 수립해 놓은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동 평가원은 효율성을 강화한 평가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199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전문적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이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 나. 사무명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 다. 추진근거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동법 시행령 제76조
- 라. 출연 필요성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진단, 임직원 교육, 경영지도·컨설팅, 정책연구 등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지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도모

#### 마. 주요사업 내용

- 지방공기업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
- 지방공기업(광역+기초)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등 수행
- 지방공기업 컨설팅 지원
- 지방공기업 설립·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법정지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법정지정기관)
- 지방공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임직원 전문교육

#### 바. 출연대상 기관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 법인설립 : 1992. 3. 2.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법정기관 전환('16.6)
- 조 직 : 3실 2센터 / 정원 65명 ※현원 60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0명, 감사 1명
- 시설현황 : 건물(지상6층) 연면적 2,550 $m^2$ , 부지 640 $m^2$
- 위치도



청사현황



위치도

#### 사.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78,000천원
- 산출근거 : 경상운영비 50,000천원, 사업비 28,000천원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공기업담당관 공기업총괄팀 김다연(☎2133-6772)